

부천시시·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결과

가. 제안일자 : 1995. 3. 17

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5. 3. 17

라. 상정일자 : 1995. 3. 24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기관명에 지번을 삽입함으로써 각 기관의 소재지를 명확히 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사무소에 소재지 지번 삽입 (제2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없 음	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8. 체계적 심사내용

○ 없 음

부천시시·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357
의 결 년 월 일	95. 3. 28 (제36회)

제출년월일 : 1995. 3. 17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☐ 제안이유

○ 기관명에 지번을 삽입함으로써 각 기관의 소재지를 명확히 하기 위함

☐ 주요골자

○ 사무소에 소재지에 지번 삽입 (제2조)

부천시시·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시·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 (사무소 소재지) 시·구사무소의 소재지는 아래와 같다.

기 관 명	소 재 지
부 천 시 청	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71번지
부 천 시 원 미 구 청	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87-2번지
부 천 시 소 사 구 청	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94-5번지
부 천 시 오 정 구 청	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0번지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	개 정	
제2조(사무소 소재지)(생략)		제2조(사무소 소재)(현행과 같음)	
기 관 명	소 재 지	기 관 명	소 재 지
부 천 시 청	부천시 원미구 원미동	부 천 시 청	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71번지
부천시원미구청	부천시 원미구 원미동	부천시원미구청	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87-2번지
부천시소사구청	부천시 소사구 송내동	부천시소사구청	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94-5번지
부천시오정구청	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(단, 구청사 신축 이전시까지)	부천시오정구청	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0번지

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결과

가. 제안일자 : 1995. 3. 17